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0가단154732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임영택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한

변 론 종 결 2022. 3. 29.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는 원고에게 188,91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1. 1.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21. 1. 14.

접수 제2909호로 마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의 계좌(D조합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2011. 1. 19.

108,469,140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후 그 중 20,000,000원만 원고에게 입금하였고, 같은 계좌에서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합계 100,446,030원을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88,915,170원(= 108,469,140원 - 20,000,000원 + 100,446,03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 수익하였다는 전제에서 침해부당이득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E조합 현덕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망 F은 2003. 11.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장남인 피고 B, 차남 G, 장녀 H, 차녀 I이 있다. 원고는 상속재산인 평택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0.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 1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고, 위 계좌로 2011. 1. 10. 위 대출금 119,435,800원이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에 소외 K에게 매도하면서 위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9,4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잔고를 실제로 증가 시킨 내역은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금 및 매매대금 밖에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위 토지를 매도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정황이 없고, 원고는 2017. 11. 29.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을 사용하면서 상속재산분할 비율을 향후 조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한 후 B가 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가 무단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혜승

목 목

1. 제 1종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7층 아파트

1층 90.9134㎡

2층 367.5061㎡

3층 367.5061㎡

4층 367.5061㎡

5층 367.5061㎡

6층 367.5061㎡

7층 367.5061㎡

8층 367.5061㎡

9층 367.5061㎡

10층 367.5061㎡

11층 367.5061㎡

12층 367.5061㎡

13층 367.5061㎡

14층 367.5061㎡

15층 367.5061㎡

16층 367.5061㎡

17층 367.5061㎡

18층 367.5061㎡

19층 367.5061㎡

20층 367.5061㎡

21층 367.5061㎡

22층 367.5061㎡

23층 367.5061㎡

24층 367.5061㎡

25층 367.5061㎡

26층 367.5061㎡

27층 367.5061㎡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대 14229.2㎡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6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4.8252㎡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4229.2분획 41.8614

